



20  
22

도민  
생활

# 202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 01. 도민생활 · 세제
- 02. 일자리 · 기업지원
- 03. 사회복지 · 교육 · 보육 · 보건
- 04. 안전 · 도시 · 교통
- 05. 농림 · 수산 · 축산
- 06. 환경 · 에너지
- 07. 문화 · 체육 · 관광



# 목 차

## 01 도민생활 · 세제 분야(18)

01. 2022년 최저임금 인상 .....	2
02. 귀농인 취득세 감면 대상 · 요건 확대 .....	3
0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	4
04.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차량 범위 확대 .....	5
05.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	6
06. 난임수술비 및 마숙아·산천성이상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7
0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8
08.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	9
09. 무허가 · 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10
10. 가산세 및 가산금 용어 통합 .....	11
11. 지방세조합 고액체납자 합산제재 시행 .....	12
12. 종이수입증지 폐지 .....	13
13. 수수료 납부방법 및 감면대상 확대 .....	14
1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 .....	15
15.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	16
1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17
17.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 .....	18
18. 데이터 개방 분석 플랫폼,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운영 .....	19

## 02 일자리 · 기업지원(8)

01. 시군 일자리센터,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 .....	21
0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22
03. 경남 창업지원 플랫폼 앱 개발 · 운영 .....	23

04. 경남사랑상품권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 .....	24
05.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25
06.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6
07.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27
08.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28

### 03 사회복지 · 교육 · 보육 · 보건(17)

01.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확대 .....	30
02.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확대 .....	31
03.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32
0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33
05. 인터넷게임 섯다운제 폐지 .....	34
06. 도민대상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확대 .....	35
0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 .....	36
08.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확대 .....	37
09. 첫만남 이용권 지원 .....	38
10.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39
11. 영아수당 지원 .....	40
1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강화 ....	41
13.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강화 .....	42
14.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	43
1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	44
16.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시행 .....	45
17. 외식 사업 트렌드를 반영한 공유주방 운영업 시행 .....	46

## 04 안전 · 도시 · 교통(14)

- 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48
- 02. 만화카뻘방탈출카뻘키즈카뻘 다중이용업소 지정 ..... 49
- 03.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 개선 ..... 50
- 04.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화재안전 규제완화 ..... 51
- 05.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 52
- 06. 위험물제조소등 휴지(휴업) 신고 의무 ..... 53
- 07.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금액 상향 ..... 54
- 08.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5
- 0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56
- 10.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금지 상향 ..... 57
- 11. 창원-함안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58
- 12.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 시행 ..... 59
- 13. 상습과적 · 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60
- 14.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 운영 ..... 61

## 05 농림 · 수산 · 축산(16)

- 01.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 63
- 02.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 64
- 03.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 65
- 04.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 66
- 05.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67
- 06.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 68
- 07.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69
- 08.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 확대 ..... 70

09.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	71
10.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	72
1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73
12. 20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	74
1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	75
14.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확대 .....	76
1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	77
16.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운영 .....	78

## 06 환경 · 에너지(10)

0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80
02.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	81
03.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必) 신설 · 적용 .....	82
04.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83
05.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84
06.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	85
07.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86
08. 목재수확 점검관리 .....	87
09.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 .....	88
10. 경상남도 보호수 도감(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	89

## 07 문화 · 체육 · 관광(5)

0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91
0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92
03.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93
0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94
05.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95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도민생활·세제 분야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044-220-7970)

---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160원
- 2022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 참고 | 「최저임금법」 제8조



# 귀농인 취득세 감면 대상 · 요건 확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044-205-3857)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16)

귀농하기 전에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더라도 60일 이내 귀농인이 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추진배경

-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  <u>귀농일 이전 60일 ~</u>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u>농업용 시설</u>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044-215-4212)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 (임차시기 요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차량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044-205-3837)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16)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추진배경

-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비과세 규정 확대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피상속인 사망 후 이전등록 없이 폐차 말소  취득세 과세	→ 피상속인 사망 후 차령 초과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3개월 이내 폐차 말소  취득세 비과세

-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7항 제2호  
차령 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된 차량은 상속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044-205-3841)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23)

2022년부터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거래사례 등을 반영한 표준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추진배경

- 건축법상 허가는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오피스텔의 실질가치를 반영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p>□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자체 장이 결정한 가액</li> </ul>	<p>□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좌 동&gt;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li> <li>○ &lt;신 설&gt; 오피스텔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별 층별 지수, 규모·형태·특수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적용</li> </ul>

### ※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1. 오피스텔

$$\text{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text{표준가격기준액}^* \times \frac{\text{각종 지수}}{\text{용도} \quad \text{층}} \times \text{면적(m}^2\text{)} \times \text{가감산율}$$

\* 행안부에서 오피스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고시하는 m<sup>2</sup>당 기준가액

#### 2. 오피스텔 외 건축물

$$\text{건축물 시가표준액} = \text{건물신축 가격기준액} \times \frac{\text{각종지수}}{\text{구조} \quad \text{용도} \quad \text{위치}} \times \text{경과연수} \times \text{면적(m}^2\text{)} \times \text{가감산 특 레}$$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044-215-4211)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 추진배경

- 저출산 극복 지원

## 주요내용

-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비 20% →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현행 연700만원)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지출하는 분부터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8)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24)

중소기업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 해당연도에 적자를 본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이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것

## 추진배경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운용 지원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li></ul></li></ul>

- 중소기업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 시행일

2022년 1월 1일(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참고 | 「지방세법」 제101조 및 제103조의28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044-205-3810)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23)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분할납부(250만원 초과할 경우)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산세 분할납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li><li>※ 병기 고지되는 지방교육세도 분납 가능,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가능 근거 無</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재산세 분할납부 규정) 및 제122조를 준용</li></ul></li></ul>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지방세법」 제115조, 제118조 및 제147조제2항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044-205-3841)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23)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이용현황만을 반영하여 주택으로 과세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저율 과세를 배제합니다.

## 추진배경

-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이 오히려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정상화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라도 <b>현황 과세</b></li><li>○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주택세율(0.1~0.4%) 적용</li><li>○ 불법 공장 부속토지 : 분리과세(0.2%) 적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는 <b>현황과세 배제, 합산과세 전환</b></li><li>○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li><li>○ 불법 공장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li></ul>

## 시행일

2022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 「지방세법」 제106조



# 가산세 및 가산금 용어 통합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044-205-3818)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53)

가산세 및 가산금 용어가 통일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혼선 방지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	•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통합

\* 가산금 산정방식 등을 삭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시행일

2022년 2월 3일

참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징수법」 제2조~제4조, 제30조~제31조

# 지방세조합 고액체납자 합산제재 시행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044-205-3818)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53)

지방세조합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조치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전국 체납액 합산 제재 필요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조합\*이 행정 제재조치 수행
  -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 지방세조합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수행이 필요한 지방세 관련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설립된 조합

## 시행일

2022년 2월 3일

참고 |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9조, 제11조~제11조의3

# 종이수입증지 폐지

|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17)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되며 요금계기(인증기)인영, 신용카드·전자  
납부영수증으로 대체됩니다.

## 추진배경

- 종이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와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수입증지의 정의 변경 ※ 종이수입증지 폐지
  -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로 찍은 인영
  - 신용카드·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 납부방법 다양화
  - 현금(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전자결제
-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 미사용 수입증지에 한하여 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 참고 |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제2조, 제5조, 제8조

# 수수료 납부방법 및 감면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6)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17)

수수료 납부방법 및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도민편의를 증진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대상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도모

##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 (당초) 수입증지 → (변경)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신설)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참고 |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5조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

| 경상남도 | 인사과(☎055-211-352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직류별 전문과목으로 변경됩니다.

## 추진배경

-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

## 주요내용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 변경

직 류	종 전		개 정 필수(5)
	필수(3)	선택(2)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시험과목)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044-205-7288)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됩니다.

## 추진배경

-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과목으로 구성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

## 주요내용

현행(5과목 : 필수3, 선택2)		개선(필수 5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경상남도 | 인사과(☎055-211-352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대상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확대를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종 전	개 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응시수수료 : (5급) 10,000원, (7급) 7,000원, (8, 9급) 5,000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참고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

| 경상남도 | 빅데이터센터(☎055-580-0295)

지역에 부족한 데이터 전문교육 기회와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상시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합니다.

## 추진배경

-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달리 지역에서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 미비로 빅데이터 상시 활용·분석 환경 제공 필요
- 디지털 생태계에서 요구되는 빅데이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

## 주요내용

-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설치('21.7월 개소), 분석실 도민 개방('21.10월)
  - 위치 : 경남연구원 1층(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시설 : 분석실(8석, 69㎡), 교육실(12석, 42㎡)
- 이용대상 : 경남도민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제공내용
  - 분석실 상시 제공(무료, 분석컴퓨터 / 파이썬 등 분석툴 / 데이터 구비)
  -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무료, '22년 3~11월 예정, 온오프라인 실시)
- 이용방법
  -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누리집(bigdata.gyeongnam.go.kr)을 통해 예약, 신청
    - ☞ 분석실 :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 빅데이터센터 > 분석실 이용 > 예약신청/확인
    - ☞ 교육신청 :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 빅데이터센터 > 교육프로그램

## 시행일

2021년 7월



# 데이터 개방분석 플랫폼,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운영

| 경상남도 | 디지털정책담당관(☎055-211-2665)

---

업무·연구·창업 등으로 도민이 필요한 경남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축적·개방하고, 데이터 자체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 추진배경

-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요소
- 도민이 경남도의 공공데이터·통계데이터를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도민의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셀프분석 기능 제공

## 주요내용

-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온라인 서비스 개시('20.8월)
- 주 소 : [bigdata.gyeongnam.go.kr](http://bigdata.gyeongnam.go.kr)
- 제공내용
  - 사업체, 소상공인, 감염병 현황 등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사례
  - 관광, 음식점, 개별공시지가, 공장등록 현황 등 공공데이터
  - 분야별 경남 통계
  - 본인이 직접 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는 셀프분석

## 시행일

2022년 1월 ('20.8월 이후 지속 운영중)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 일자리 · 기업지원

# 시군 일자리센터,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

| 경상남도 | 일자리경제과(☎055-211-3323)

도내 5개 시군 시범사업 추진, 일자리 키오스크 구매 및 설치를 통한 상시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합니다.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사회소통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채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구인·구직자간 불필요한 채용절차 간소화 필요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5개 시군(김해, 거제, 의령, 고성, 하동)
  - ※ 창원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도 일자리센터) 설치
- 지원내용
  - 비대면 채용 면접(녹화면접 및 실시간 화상면접 진행)
  - AI채용정보 제공(실시간 채용정보 업데이트, 지역별 맞춤형 채용정보 추천)
  - 취업 콘텐츠 제공(직업테스트, 사진촬영 등)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 참고 |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044-215-4213)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가구유형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경남 창업지원 플랫폼 앱 개발 · 운영

| 경상남도 |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385

---

창업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경남창업포털”을 연계한 앱 개발을 통해  
도내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 추진배경

- (예비)창업자가 도내 창업 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경남창업포털”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앱 개발·운영

## 주요내용

- 앱 스토어 내 “경남창업포털 사인” 검색·다운로드 제공
-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경남창업포털”(gnstartup.kr) 기반 앱 구축·운영
- 도내 기관별 창업정보(지원사업, 행사, 투자정보 등) 통합 제공
- 창업정보(지원사업, 행사 등)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 전문가와 실시간 멘토링 채팅 서비스 제공
- 지원사업 간편 신청 기능 제공

## 시행일

2022년 1월

---

| 참고 |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

# 경남사랑상품권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

|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경남사랑상품권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지급받는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추진배경

- 빠른 소비 유도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조기 증대 및 소비 규모 확대에 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상품권 구매	할인율(3~10%)만큼 할인가 구매	정가 구매
가맹점	가맹점 별 적용 할인율 동일	가맹점 별 캐시백율 상이
결제 후	상품권 잔액에서 결제금액 차감	상품권 잔액에서 결제금액 차감 + 가맹점별 캐시백율에 따른 캐시백 지급
예시	할인율 5%, 상품권 10,000원 구매 - (소비자) 9,500원 지급 - (상품권) 10,000원 생성	캐시백율 5%, 상품권 10,000원 구매 - (소비자) 10,000원 지급 - (상품권) 10,000원 생성 - (결제 후) 500원 생성

## 시행일

2022년 1월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고용노동부 |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3-7919)

---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추진배경

-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 참고 | 「고용보험법」제77조의7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로 시행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 1. 1.
- 30 ~ 299인 : 2021. 1. 1.
- 5 ~ 29인 : 2022. 1. 1.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5~29인)

| 참고 | 「근로기준법」제55조



#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경상남도 | 노동정책과(☎055-211-3464)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청소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으로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추진배경

- 사업주에 개보수비 지원을 통한 조속한 노동환경 개선 유도
- 저 평가된 현장 노동자의 역할에 걸맞은 처우 개선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대학복지시설중소기업 청소경비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 (사업비 / 지원금액) 30백만원(전액도비) / 최대 5백만원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나,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로 최대 125만 원
  -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 지원한도는 변동 가능
  - (예) 총10,000천원 개보수의 경우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1,250천원), 초과자부담(3,750천원)
- (지원내용) 청소, 경비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 휴게시설 신설, 확충(남녀구분, 타 노동자와 구분 등)
  - 휴게실의 지상화, 기타(샤워장·냉난방시설 설치, 조명시설 교체 등)
- (추진절차)



## 시행일

2022년 1월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시행일 : 2022. 8. 18.]

#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경상남도 | 노동정책과(☎055-211-3474)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과 기능경기 저변확대를 위한 '제57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경상남도에서 개최됩니다.

## 추진배경

- 1966년부터 매년 시도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22년은 경남도의 개최순번임
- 숙련기술 우대 풍토 조성 및 기술인력 저변확산 기대

## 주요내용

- (대 회 명)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개최시기) 2022. 8. 29.(월) ~ 9. 5.(월) [8일간]
- (대회장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창원기계공고 등 8개 경기장
- (경기종목) 폴리메카닉스 등 53개 직종
- (대회규모) 약 10,000여명(선수단 2,000명, 집행위원 1,500명 등)
- (주 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 (주 관) 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 경상남도기능경기위원회

## 시행일

2022년 8월

| 참고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3 사회복지 · 교육 · 보육 · 보건

#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확대

| 경상남도 | 통합교육추진단(☎055-211-3674)

저소득층 교육지원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신청 기간 및 카드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 배려를 위해 사업명칭을 변경합니다.

## 추진배경

- 원활한 신학기 준비 지원 및 카드 사용기간 폭넓은 보장 필요
- 지원대상자 낙인효과 방지 및 수혜자 배려를 위해 사업명칭 변경 필요

##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사업명칭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3월(1개월간)	2월~7월(6개월간)
카드사용기간	3월~10월	2월~11월
금 액	100천원(바우처카드 지급)	전년도와 동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경상남도 교육지원 홈페이지) 신청

**시행일** 2022년 2월

| 참고 |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확대

경상남도 | 통합교육추진단(☎055-211-3685)

당초 대학생들에게 지원했던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을 대학원생에게도 확대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사회이동성 촉진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대상 : 대학생	대상 : 대학생, 대학원생

### 《 사 업 개 요 》

-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대학(원) 재(휴)학생
- ▶ 지원범위 : '22년도 발생한 1년분 상환 이차
- ▶ 사 업 비 : 105,000천원(도비100%)
- ▶ 지원금리 :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율
-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개인별 대출 실행계좌 상환

## 시행일

2022년 하반기

참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교육부 |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2)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학력보장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기초학력’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함

## 주요내용

-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도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 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 참고 | 「기초학력보장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이 제외됩니다.

## 추진배경

- 변화된 사회인식 등을 반영하여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

## 주요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제외

종 전	개 정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만화대여업 설치 불가능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만화대여업 설치 가능

##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 참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02-2110-6292)

---

2022년 1월 1일부터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

## 추진배경

- 게임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로 게임시간 제한한도 일원화
- (게임시간 선택제)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 참고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삭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도민대상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확대

경상남도 | 여성정책과(☎055-211-5224)

도민 대상 맞춤형 성평등 교육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도내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추진배경

- 지역성평등지수 지속 하위권, 젠더폭력, 청년인구 유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로서 성 평등 의식 확산 필요
-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 필요

## 주요내용

- 교육대상 : 아동, 학생, 교원, 공공기관 서비스 종사자, 농어업인, 노인 등
- 교육내용
  - 일상생활 속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개선
  - 젠더갈등 및 젠더폭력 예방
  - 농어촌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농어촌 문화 조성
- 교육인원 확대 계획

종 전	개 정
□ 교육목표 인원 : 7,000명(300회)	□ 교육목표 인원 : 8,400명(360회)

시행일 2022년 1월

참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9)  
경상남도 | 여성정책과(☎055-211-523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플랫폼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추진배경

- 여성의 생애주기별 다빈도 경력단절원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원스톱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운영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내
- 사업내용
  - 개발한 구직준비도 진단검사를 통해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상별(구직, 재직, 이·전직) 맞춤형 상담 지원
  - 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1명당 2회)
  - 경남지역 재직여성을 위한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캠프 지원

## 시행일

2022년 2월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 권익기반과(☎02-2100-6449)  
경상남도 | 여성정책과(☎055-211-5245)

성매매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사회복귀촉진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를 확대 운영지원 합니다.

## 추진배경

- 최근 성매매 관련 상담과 교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소 추가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필요

## 주요내용

기 존	변 경
성매매피해자 상담소(2개소) 창원 2(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3개소) 창원 2(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김해 1(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 ※ 지원내용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상담(현장방문 포함) 및 기관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의료·법률지원(1인 최대 760만원, 1년 원칙)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상담·강의 및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

#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044-202-3398)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63)

모든 출생 아동에게 생애 초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전달체계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국민건강보험 | 급여사업실(☎033-736-4656)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임신·출산 진료비를 한 자녀 100만원, 다자녀 1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출산을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

## 주요내용

구분	기존	변경
지원금액	▶ 한자녀 60만원 ▶ 다자녀 100만원	▶ 한자녀 100만원 ▶ 다자녀 140만원
사용기간	1년	2년
지원항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방문신청(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시행일** 2022년 1월

| 참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영아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73)

영아수당 도입으로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 영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24개월 미만) 영아수당 지급
- 지원금액 :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 지급방식 : 현금(영아수당 지원) 또는 보육료 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
- ※ 만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지급('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단위 : 만원)

현행					'22년 이후				
연령		0세	1세	2세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10			아동수당		월10		
보 육	시설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 육	시설	현금 월30 ⇒ 월50 ( '22년 ) ( '25년 )	가정양육수당 지원	
	미이용	월20	월15	월10		미이용	영아 수당	월10	
보 육	시설	보육료(바우처)지원			보 육	시설	바우처 (보육료) 월50	보육료(바우처)지원	
	이용	월50	월50	월28 ~36		이용		월28 ~ 월36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영유아보육법」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044-202-3444)  
 경상남도 | 아동청소년과(☎055-211-4273,427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주거 지원, 지지체계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 추진배경

-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① 자산형성지원 (디딤씨앗통장)	월 5만원 한도 내 1:1 매칭 지원	월 10만원 한도 내 1:2 매칭으로 지원 확대
② 자립수당	보호종료 3년 이내 월 30만원 지급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기간 확대
③ 자립지원 전담기관	미설치	전담기관 운영으로 사후관리 상담 실시 및 주거생활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대학생 안정자금	미지급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게 2백만원(일시금) 지원
⑤ 주거지원 확대	LH 임대주택 연계 지원 등 44실 (보증금 5백만원·월임대료 15만원 이내)	• LH 임대주택 연계 지원 등 50실(보증금 지원) • 주거 공간(관리비만 부담) 27실 지원 • 자립 체험관 3실 신규 운영(단기 한달 한학기 등)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아동복지법」

#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7)  
경상남도 | 아동청소년과(☎055-211-4274/276)

아동학대 대응 공적보호 추진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학대가정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추진배경

-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추진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및 학대가정의 재발방지 지원으로 아동학대 대응 강화

## 주요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① 학대피해가정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5개소	<b>7개소 운영(2개소 확충)</b> (경남·경남서부·김해시·창원시·양산시·진주시·거제시)
②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쉼터 확충	4개소	<b>6개소 운영(2개소 확충)</b> (창원시·진주시·거제시·양산시·통영시 등)
③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형 상담심리센터 운영	미설치	→ <b>학대피해가정에 상담서비스 제공</b>
④ 특별한 보호(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영아, 경계성지능아동)가 필요한 아동에 전문가정위탁 보호 확대	12명	<b>23명(11명 확충)</b> * 전문가정위탁 시 위탁부모에 월 100만원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아동복지법」 제45조 등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0)  
경상남도 | 아동청소년과(☎055-211-4283)

**만 8세 미만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2년 4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 시행

## 추진배경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만 7세 미만 전 아동	만 8세 미만 전 아동

\*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96개월

\* '22년 1~3월 만 7세 이상 아동, 4월 소급 지급

## 시행일

2022년 4월 1일

참고 | 「아동수당법」 제4조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02-2100-6242)  
경상남도 | 아동청소년과(☎055-211-4293)

2022년 1월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연령	만11세~18세	만9세~24세
지원금액	138천원(월 11,500원)	144천원(월 12,000원)

※ 지원대상 : 만9세 ~ 만24세(1998.1.1. ~ 2013.12.31.) 저소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 만19세~24세 : '22년 5월부터 지원(8개월분)

※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이용권) 지급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5월 (만19세~24세)

참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시행

보건복지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044-202-3166)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055-211-4854)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로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안내해드립니다.

## 추진배경

- 복지사업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나에게 필요하고',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기 어려워 신청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나에게 맞는 '맞춤형 급여' 혜택 제공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맞춤형복지(복지멤버십) 가입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안내사업 : 생애주기 8개, 자격확인 40개, 소득재산확인 30개 (총 78개)
- 안내방법 : 복지로, SMS, 서면 등을 통한 정기적 안내
- 문의처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전담 콜센터(1566-0313), 기타복지문의(129)

※ 21. 9. 1.(수)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시행일

2021년 9월 1일

참고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 외식 사업 트렌드를 반영한 공유주방 운영업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46)  
경상남도 | 식품의약과(☎055-211-5025)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업이 가능해집니다.

## 추진배경

- 매년 약 20만명이 음식점을 신규 창업 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창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 \* ① 창업자금 66.3% ② 창업실패 두려움 28.0% ③ 창업지식 부족 23.5%('18년, 중기부)
- 공유경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유주방’ 제도의 도입 필요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주방을 공유하여 사용 불가 - 1개의 주방을 1명의 영업자만 사용 가능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공유하여 사용 가능

※ 공유주방 운영업자 : 공유주방을 설치하고 개별 사업자에 주방을 임대

↳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서류 등 제출 필요

※ 개별 사업자 : 공유주방을 임차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영업 가능

##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참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 신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4. 안전 · 도시 · 교통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5)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848)
경상남도	안전정책과(☎055-211-2712)
	노동정책과(☎055-211-3462)

사업주 등 안전·보건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총괄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경영 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명시
  - 사업주·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명시와 임대·용역·도급 등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명시
  - 원료나 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명시
-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참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소방청  
경상남도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7)  
예방안전과(☎055-211-5414)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추진배경

-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에 방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함
- \*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다중이용업 : 23개 업종 - (영) 휴게음식점영업 등 20개 업종 - (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다중이용업 : 26개 업종 - (영) 휴게음식점영업 등 20개 업종 - (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b>(+)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b>

-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참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 개선

소방청  
경상남도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7)  
예방안전과(☎055-211-5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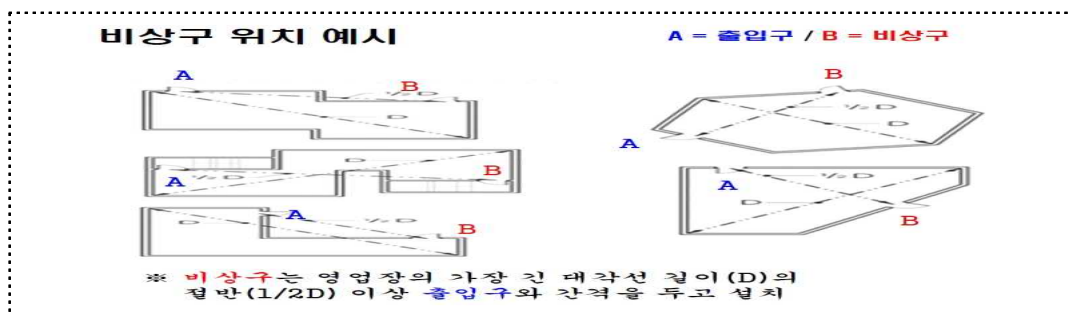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추진배경

- 건축 형태 다양화에 따라 이용자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①대각선, ②가로, ③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함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 비상구 설치기준</li> </ul> <p>주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긴 변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 비상구 설치기준</li> </ul> <p>주출입구로부터 <u>영업장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1/2이상</u> 떨어진 위치에 설치</p>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참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화재안전 규제완화

소방청  
경상남도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7)  
예방안전과(☎055-211-5414)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 추진배경

-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 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차단벽(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 단, 확장된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다중이용업 비상구 구조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칸막이)으로 분리	○ 다중이용업 비상구 구조 ○ (단서신설) 실내 유원시설업 내에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되는 경우 <u>차단벽(칸막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u> ※ 「다중법」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에 한정

- 시행일 이후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새롭게 설치 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

## 시행일

2022년 6월 8일

참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044-205-7488)  
경상남도 | 예방안전과(☎055-211-5425)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진배경

-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인지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개선

## 주요내용

###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 정기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분	기존	변경
법령	법 제18조 제1항	법 제18조 제2항 <신설>
기준	정기점검의 기록, 보존만 / 제출 ×	정기점검의 기록, 보존 + <b>제출 의무</b>
처벌	제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b>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b>

### ○ 제출대상

- 예방규정 제정 대상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휴업) 신고 의무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044-205-7488)  
경상남도 | 예방안전과(☎055-211-5425)

위험물제조소등의 휴지(휴업)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추진배경

- 장기간 방치된 휴업 시설의 사고 위험성 저감 조치

## 주요내용

### ○ 휴지 개시·종료 사실의 신고 의무화

- 휴지 개시 또는 휴지 종료시 14일 전까지 신고

구분	기 준	변 경
법령	없음	법 제11조의2 <신설>
기준	휴지의 개시, 종료 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의무 x)	휴지의 개시, 종료 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의무 ○)
처벌	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중지재개 신고를 기간 이내 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

#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금액 상향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044-205-7488)  
경상남도 | 예방안전과(☎055-211-5425)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됩니다.

## 추진배경

- 법 제정당시 과태료 상한액의 규범력 약화 및 국민의 안전수요증대 등을 반영한 개선 조치

## 주요내용

### ○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

-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개정

구분	기존	변경
법령	법 제39조	법 제39조
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처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500만원</b>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참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5)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055-211-4343)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p><b>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비대상시설에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li><li>* (해석상)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해당</li></ul>	<p><b>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행과 같음</li><li>○ (제2항) 위험발생 방지 범위 내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li><li>* 개인차량 이동, 택배물품 세대배달 등 제한</li></ul>
<p><b>그 밖의 실제 업무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소관리 및 조경</li><li>○ 분리수거</li><li>○ 관리사무소 업무보조</li></ul>	<p><b>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li><li>○ 재활용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li><li>○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li><li>※ 그 밖의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는 제한</li></ul>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참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5)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055-211-4343)

500세대 미만 단지도 500세대 이상 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합니다.

## 추진배경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주요내용

총 전	개 정
(원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의 간접 선거(호선) *(예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직접선거 가능	(원칙) 전체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 *(예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 등이 간접선거 가능

## 시행일

2021년 10월 19일

참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급지 상향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59)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055-211-4315)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되며 창원시의 급지가 상향되어 기준임대료 지원이 증가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최저수준 보장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까지 확대
- \* 선정기준 추이 : (19)중위소득 44%이하 →(20~'21)45%이하→(22)46%이하
- 창원시의 인구규모, 실제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지 조정(4급지→3급지)
- \* 창원시 급지 상향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가구원수별 월 38,000원~69,000원 증가됩니다.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지급 경남 전 시군 4급지 적용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급여 지급 창원시 3급지 적용(그 외 지역 4급지)

※ [ 참고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선)

(단위 : 원/월)

구 분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201,000	163,000
2인	224,000	183,000
3인	268,000	218,000
4인	310,000	254,000
5인	320,000	262,000
6~7인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주거급여법」 및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 창원-함안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경상남도 | 교통정책과(☎055-211-4365)

창원 - 함안 간 버스 도착정보 안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추진배경

-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21. 11.1.)과 더불어 버스 도착 정보 안내를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 버스 도착정보 안내로 정시성 확보, 효율적인 버스운영관리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창원시, 함안군
- 사업내용 :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제공서비스
  - 버스 도착 및 환승정보 안내
  -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 설치(시인성 증대)
- 제공매체 :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스마트 폰 앱, 인터넷 포털, 국가대중교통 정보센터(TAGO) 등

## 시행일

2022년 10월



#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1)  
경상남도 | 토지정보과(☎055-211-4413)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추가 확대 시행
- \* (지적확정측량)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운영 ☞ 24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 운영 ☞ 31개 토지개발사업(7개 사업 추가)

### ❖ 지적확정측량 추가 대상사업

-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④ 「신항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⑦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설사업

## 시행일

2021년 11월 29일

참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044-201-3887)

---

2022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 추진배경

- 대형 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위해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주요내용

- 최근 1년간 과적·적재불량 위반 건을 합산하여 연 2회 위반시 3개월 할인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 운영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과(☎044-201-4238)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가 '22년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짐배송 서비스를 김해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

## 주요내용

- (대상자) 김포 · 김해 · 청주공항\* 등을 통해 제주공항에 입도하는 이용객 중 해당서비스 신청자
  - \*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 대상 시범운영('21.7.~'22.7.) 이후 결과 분석에 따라 확정 예정이며, 공항은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가능
- 국내선 출발 전 짐배송 전용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

## 시행일

2022년 8월(예정)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5. 농림 · 수산 · 축산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23)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 활동 보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 활동을 보상
- 농어촌 인구감소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라 농어가 실질적 소득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지급대상)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 (지급제외대상)
  -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 (지급금액) 경영주 30만원/인/연간,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간
  - \* 지급수단은 지역화폐 우선(선불카드 병행)
- (지급신청) 2월중
- (지급시기) 상반기 중

## 시행일

2022년 2월

| 참고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31)

출산 후 청년여성농업인의 육아·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청년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거주 만 19세 ~ 40세 출산 여성농업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거주자

### ※ 여성농업인이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900만원(9개월×100만원), 20% 자부담 포함
- (지원내용) 출산 및 보육 관련 가맹점 사용가능한 출산바우처 카드 제공
- (신청기간) 2022. 2월 ~
-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세부적 시행지침은 추후 시·군 공고 등을 통해 공지

## 시행일

2022년 2월

참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044-201-1742)

---

'22년 4월 14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

## 추진배경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전문가·농업인단체 등 의견 수렴, 정책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필지별)과 작성대상(1천㎡→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 시행일

2022년 4월 15일

---

| 참고 |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25)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신형 농기계를 확충하여  
임대농기계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추진배경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노후화로 농업인 이용 불편 및 농기계 유지·보수 애로

## 주요내용

- (사업량) 431대
- (사업비) 4,300백만원(도비 860, 시군비 3,440)
- (사업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형 농기계 구입 지원
  - \* 구입 기종은 시·군 자체 선정
- (참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개소)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3	2	2	3	1	1	1	3	2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2	3	3	3	2	4	4	4	

※ 농기계임대료 : 1~21만원/1일

**시행일** 2022년 1월

| 참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13)

풍수해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축산시설 현대화·규모화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정시 피해 대형화 우려
- 풍수해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사업량) 34개소
- (사업비) 12억원(도비 1.2, 시군비 4.8, 자담 6)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양계, 젓소농가
  - \*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전기인입·증설비용 포함)
- (지원한도) 양돈 37백만원, 산란계 38백만원, 육계 26.5백만원, 젓소 30백만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참고 | 축산법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055-211-6563)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반려동물 진료비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반려생활 유지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b>한부모가족</b> ) <b>장애인 보조견 소유자</b>

### 《 사업 내용 》

- 사업량 : 1,666가구
-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00, 자부담 100)
-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아술 상대수술 눈물자극제거술 제외)

##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참고 |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044-201-2372)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추진배경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 조성

## 주요내용

-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 참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남도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0)  
동물방역과(☎055-211-6585)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가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다소비 축산물인 달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를 음식점 등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선별포장 처리 달걀 기준 변경

종 전	→	확 대
가정용 달걀 (슈퍼마켓, 마트 등)		가정용,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사용 달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도가공업 제외)

### 《 관련 자료 》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공단**

식품안전관리공단(농식품, 축산물, 유제품, 임산물, 가공식품, 제과점, 축산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안전관리공단**

이제는 가정용 달걀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http://www.mfds.go.kr)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식용란수집판매업 준수사항

#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 경상남도 | 서부정책과(☎055-211-6053)

선배 귀농인의 현장경험과 영농기술 공유로 귀농 초기 농촌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귀농현장닥터를 운영합니다.

## 추진배경

- 귀농 정착과정의 다양한 어려움 해소를 통한 초기 영농 실패·역귀농 예방 필요
- 현장경험이 풍부한 선배 귀농인의 경험과 영농기술 공유로 귀농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귀농인 : 도내 농촌마을로 귀농한 지 3년 이하인 자
  - 귀농현장닥터 : 분야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귀농인(5~15년 차)
- (지원분야) 작목선정, 영농기술과 주민갈등예방·지역융화 등
- (사업내용) 귀농현장닥터의 현장상담·영농기술지도 등 활동비 지원(100천원/회)
- (활동방법) 귀농현장닥터가 귀농인 농장을 방문하거나 선도농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밀착형 1:1 상담 또는 영농기술 지도
- (신청방법)
  - 귀농인 : 신청서 작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귀농귀촌담당부서) 제출
  - 귀농현장닥터 : 신청서 작성 → 시·군 귀농귀촌협의회·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부서)제출 ※ 도에서 인력풀 100명 최종 선정
- (문의처)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부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5조 등

#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 경상남도 | 서부정책과(☎055-211-6053)

농촌마을 활력 제고 및 귀농·귀촌인 등 농촌관계인의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도내 농촌지역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지역 문화적 소외가 심한 실정
- 농촌지역 인력부족으로 마을진입로·소공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등 재능나눔 활동가(개인 또는 단체)
- (지원분야) 문화·복지증진 및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
- (사업내용) 재능나눔 활동 수행 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최대 2,500천원/1개소/마을
- (신청자격)
  - 마을 : 인구 100명 미만의 농촌마을
  - 재능기부자 :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 (신청방법)
  - 마을 : 신청서 작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귀농귀촌담당부서) 제출
  - 재능기부자 : 사업계획서 작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귀농귀촌담당부서) 제출
  -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귀농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 재능활동 수요마을 정보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 (문의처)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부서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 참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해양수산부 | 소득직불제팀(☎044-200-5454)  
경상남도 | 해양항만과(☎055-211-391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연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 주요내용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지원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신청대상 :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면허·허가·신고 어업 경영인 중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원 이상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종 전	개 정
어가당 연간 75만원	→ 어가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0천원 +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20%) 160천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5)  
경상남도 | 해양항만과(☎055-211-3953)

2022년부터 모든선박(어선 포함)에 대하여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선박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심 및 대책의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국내항해 모든 선박(어선 포함)에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0.5% 이하 적용
  - ※ (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 경유의 함유량 0.05% 이하 적용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0.1% 이하 적용
  -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울산항, 평택·당진항
- 타 선박 또는 선박 외 타 용도로 사용되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추가 설치 당시의 배출기준이 적용됨.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3)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23)

「수산부산물법」 시행(2022. 7. 21.)으로 버려지던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기존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부 용도로만 재활용이 허용되었으며, 처리·보관 시 수산부산물의 특징(계절적, 염분 등) 반영없이 일괄 규제
-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처리 및 보관 기준의 법적 기반 필요

## 주요내용

- 수산부산물의 범위,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물처리업 허가,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연구 및 산업기반 조성 등 재정·기술적 지원근거 마련

구분	종 전	개 정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일부 유형에 한해 재활용 허용 -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재활용 유형의 경우,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거쳐야만 허용	-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 시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여 탈황흡수제, 연안정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
폐기물 처리·보관기준 현실화	-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타 폐기물과 같이 보관기간, 보관량 등을 일괄 규제함 - 수산부산물의 특징(계절성, 인체 무해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처리 비용 발생	→ - 수산부산물의 계절성, 인체 무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리·보관·운반기준을 마련하고, 미생물 처리, 화학처리 등 신공법 적극적으로 도입가능

##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참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9)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24)

스티로폼 없는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추진배경

- 양식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 확대 보급하여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마련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22년 11월부터 어장에 부표를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

\* 수하식양식업에 해당(수하식양식업 제외 그 외 양식업 등은 '23년 11월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면허·구획어업·수산종자 생산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 지원내용 : 친환경부표 보급
- 지원조건 : 폐스티로폼 부표 80%이상 회수

\* 친환경부표공급 100% 시범해역 조성(거제시 거제만, 고성군 자란만) : '23년까지

※ 확대지원 : ('21년) 277억원 → ('22년) 529억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25)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방비 보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추진배경

- 자연(어업)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의 한계로 실질적 복구를 위해 사업 추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으로 지방비 보조 확대를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 가입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양식업을 경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 지원내용 : 재해보험 가입시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일부 지원
  - (2021년) 국비 제외분의 지방비 30% 이내 / 주계약 4백만원, 특약 추가 1백만원
  - (2022년)
    - 주계약 : 국비를 제외한(50%) 최대 6백만원내에서 지방비 30% 지원
    - 특 약 : 국비를 제외한(50%) 지방비의 30% 범위내에서 지원(2년간 한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운영

| 경상남도 | 섬어촌발전과(☎055-211-6173)

해수욕장 비개장시기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 추진배경

-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안전관리 요원 및 환경정비 인력 상시 배치
- 해수욕장 비개장 기간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관리에 비교적 취약
- ⇒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소상공인을 활용하여 안전·환경 지킴이 운영

## 주요내용

- 사업위치 : 도내 해수욕장 21개소(국립공원 관리 및 미개장 제외)
- 채용대상 :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소상공인 등
- 채용기간 : 2022년 2월 ~ 12월 (7~8월 제외)
- 운영시간 : 주20시간 근무(최저임금 적용)
- 주요임무 :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사고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지도 등

## 시행일

2022년 1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6. 환경 · 에너지 분야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 환경교육팀(☎044-201-6532)  
경상남도 | 환경정책과(☎055-211-6614)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으로 법률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추진

## 추진배경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권자 세분화,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우수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주요내용

개정전	개정후(전부개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명 변경
- 도 환경교육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 요청
-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 우수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권자 세분화(시·도지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일

2022년 1월 6일

\* | 참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환경부 |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경상남도 | 환경정책과(☎055-211-6644)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함으로써 부족한 고품질의 재생원료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전도민의 폐기물 재활용 인식 제고 기여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공동주택 시행 2020. 12. 25.	단독주택 확대 시행 2021. 12. 25.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시행전**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배출

**시행후**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 라벨은 착천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파-악 뚜껑 달기

## 시행일

2021년 12월 25일

##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2022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이 혼합되어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를 신설·적용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실제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되어 국민혼란 및 재활용 효율성 저해(재활용공정에서 폐기물처리)

## 주요내용

-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표기(도포·첩합마크·♻️) 표시
- 몸체에 다른 재질이 도포·첩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참고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 기후전략과(☎044-201-6978)  
경상남도 | 기후대기과(☎055-211-6673)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이 마련됩니다.

## 추진배경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예방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해소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제10조~제12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 (제15조~제22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 (제23조~제24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실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 (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추진
- (제29조) 탄소중립 도시 지정
-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 (제31조~제32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 (제44조) 녹색 국토의 관리
- (제48조~제53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사업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 (제59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시행일

2022년 3 월 25 일

참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본격시행

경상남도 | 기후대기과(☎055-211-670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2020년 1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서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행
- 도민 인식 증진을 위해 2021년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전체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21.12.31)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22.12.3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단속제외(~'23.12.31)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개요>

- 제한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21시)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 제외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차, 영업용 자동차 등
- 제한지역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는 단속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제한 예정('22년 하반기 예상)
- 단속방법 :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CCTV)
- 위 반 시 : 과태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유예대상 및 기간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2.12.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3.12.31일까지 단속 제외
- 유예신청
  -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에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허가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044-201-7006)

---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추진배경

-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축산 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주요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

| 참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042-201-4191)

---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됩니다.**

---

## 추진배경

-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 주요내용

-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 '19.4.1.부터 '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

| 참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목재수확 점검관리

산림청 | 산림자원과(☎042-481-8874)  
경상남도 | 산림정책과(☎055-211-6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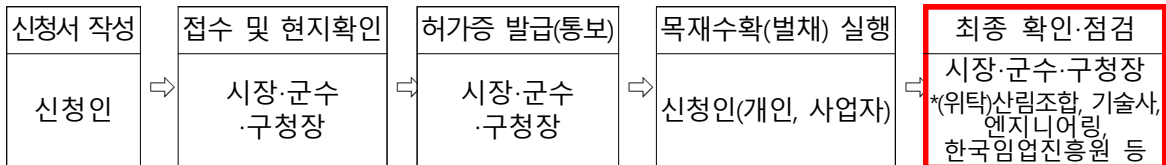
목재수확(벌채) 허가·신고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강화됩니다.

## 추진배경

-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입목벌채지 현장점검 강화
- 목재수확지에 대한 국민이해 및 공감 확보

## 주요내용

- 목재수확(벌채) 허가·신고지 점검을 산림전문 기술자에게 대행



- 대규모 벌채지에 목재수확 입간판 설치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참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

산림청  
경상남도

산림환경보호과(☎042-481-8819)  
산림정책과(☎055-211-6835)

보호수 유지·관리 방안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호수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안전·생육상태 진단
  - 일반진단 : 현장답사와 기본적인 조사만으로 나무의 건강이상 진단
  - 정밀진단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료를 분석하여 진단
- 전반적인 실태조사
  - 위치정보 : 소재지, 좌표, 주변여건 등
  - 지정정보 : 지정번호·일자, 지정권자, 관리기관
  - 생육정보 : 수령, 수고, 흉고직경, 흉고둘레 등
  - 사진촬영 : 원경, 근경, 안내판등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참고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상남도 보호수 도감(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 경상남도 | 산림정책과(☎055-211-6835)

보호수 도감(스토리텔링)을 발간하여 보호수가 가진 다양한 가치 인식 제고 및 유지·관리 정보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추진배경

- 보호수는 수목의 생태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정신적 가치 등으로 인해 중요한 보호 대상임.
- 보호수 도감 제작을 통해 보호수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발굴·활용 및 도민 홍보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상남도 18개 시·군 보호수
- 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량 : 보호수 도감(스토리텔링) 제작
- 사업내용
  - 보호수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원천 자료 구축
  - 보호수에 대해 수집한 전설, 민담, 신화, 설화 등 스토리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7. 문화 · 체육 · 관광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044-203-2728)  
경상남도 | 문화예술과(☎055-211-4523)

보다 많은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규모가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창작준비금)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금 지원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예산액 42,200백만원	예산안 60,300백만원
일반예술인 12,000명	일반예술인 18,000명
신진예술인 3,000명	신진예술인 3,000명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및 인원은 전국 수치임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지원금액) 일반예술인 3백만원(격년제), 신진예술인 2백만원(생애 1회)
- (심사기준) 원로, 장애 예술인은 우선 선정하며, 일반 예술인은 소득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을 통해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쳐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044-203-2728)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

## 주요내용

-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 금지
-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서 다른 예술인이나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부여
-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와 신고사건 조사, 구제조치 등 법적 보호절차 규정

## 시행일

2022년 9월 25일

| 참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044-203-2519)  
경상남도 | 문화예술과(☎055-211-454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지원대상인 도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00% 지원됩니다.

## 추진배경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체 저소득층의 80%</li><li>- '21년 대상자 12.6만 명</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체 저소득층의 100%</li><li>- '22년 대상자 17.3만 명</li></ul>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일인당 연 10만원
- 사 용 처 : 문화(도서, 음악, 영화, 공연 등), 체육(스포츠관람), 여행 등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044-203-3187)  
경상남도 | 체육지원과(☎055-211-471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이 일반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1인당 월 지원금액은 5천원, 지원기간이 2개월 늘어납니다.

## 추진배경

-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① 지원대상 · (상반기) 만12~64세 저소득층 장애인 · (하반기) 만19~64세 일반 장애인 추가	① 만19~64세 일반 장애인 · 만12~18세 유소년은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지원
② 지원금액 : 월 8만원	② 월 8만 5천원
③ 지원기간 : 최대 8개월	③ 최대 10개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9~64세 장애인
- 사업내용 : 스포츠 수강료 1인당 월 8만 5천원 최대 10개월 지원
- 사용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을 통한 이용권 신청 및 스포츠 강좌 선택·결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체육진흥과(☎044-203-3137)  
체육지원과(☎055-211-4723)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지원액이 월 8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  
최소 지원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납니다.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① 지원금액 : 월 8만원	① 월 8만 5천원
② 지원기간 : 연간 8개월 이상	② 연간 10개월 이상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5~18세 유·청소년
- 사업내용 : 스포츠 수강료 1인당 월 8만 5천원 연간 10개월 이상 지원
- 사용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을 통한 이용권 신청 및 스포츠 강좌 선택·결제

## 시행일

2022년 1월 1일